

# 『스위스, 화학제품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ORRChem) 개정안(정정)』

2026. 03. 17.

TBT 통보여부	통보	HS Code	28, 29
통보국	스위스	전년도 수출액 (천불)	79,732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규제 요약서

##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스위스 연방 내 특히 위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보건상의 위험 최소화 및 국제적인 규제 기준에 따른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제품 위험 저감 명령 및 기타 법령을 개정함
- (적용범위) HS 코드 - 28\*, 29\*\*
  - \*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 유기화합물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본 개정안에 따라 스위스 내 화학물질 관련 위험 저감을 위해 ①PFAS 규제 강화, ②수은 및 염소화 파라핀 관리 확대, ③자연 환경에서의 화학제품 사용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 등 규제 체계가 강화됨
  - ※ 본 통보문을 통해 통보된 규제는 적용범위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 (본 보고서 p. 3 참조)으로 개정내용에서 정정된 사항은 없음

##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각국은 PFAS·POPs, MCCP 등 화학물질·제품에 대해 제조·사용·수입을 제한하고, 금지물질을 확대 강화하는 추세
  - (EU) REACH 및 POPs 규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장 출시를 제한
  - (미국) TSCA에 따라 PFAS, POPs 등 고위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평가 및 제한
  - (일본) CSCL에 따라 잔류성·난분해성 화학물질 제조·사용을 제한하고, PFAS·POPs 등은 제조·수입 금지 또는 사용 제한 대상으로 관리

- (중국) MEE Order No. 12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관리 제도를 운영, POPs 등 고위험 물질은 제조·사용 제한

####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PFAS 및 POPs 등 규제 확대에 따라 원료 대체 및 제품 재설계 필요성, 공급망 관리 등 일부 비용 소요 예상
- (권고사항) ①제품 내 제한물질 사전 스크리닝 및 분석 체계 구축, ②Non-PFAS 원료 전환 추진, ③규제 변경사항 대응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금지 물질 확대) PFAS·POP, MCCP, 수은 등 금지 물질 확대로 대체원료 확보, 안전성 평가, 공급망 관리 등의 부담 증가
- (행정 비용 소요) 제한물질에 따른 원료 전환, 내부 컴플라이언스, 공급망 등 변경·유지·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 소요 예상

####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규제 적합성 확보 및 비용 효율 대응
  - (중견기업) 이중 규제(EU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고도화
  - (대기업) 글로벌 통합 전략 및 공급망 관리 강화

# 목 차

요약문 .....	1
I. 규제 개요 .....	2
II. 규제 세부 내용 .....	3
III.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27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27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	29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30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30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31
VI. 대응 방안 .....	32
참고 1 참고자료 .....	33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	34
참고 3 규제원문(부속서) 원문 번역본 .....	35

##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Draft Ordinance of the Federal Council concerning amendments of the Ordinance on the Reduction of Risks relating to the Use of Certain Particularly Dangerous Substances, Preparations and Articles (Chemical Risk Reduction Ordinance, ORRChem, Fedlaw number: SR 814.81)		
	국문	특히 위험한 특정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위험 저감에 관한 조례(화학물질 위험 저감 조례, ORRChem, 연방법 번호: SR 814.81)의 개정에 관한 연방의회 조례안		
WTO/TBT 통보문 번호	G/TBT/N/CHE/301/Corr.1	통보국	스위스	
채택(예정)일	2026. 11. 01.	시행현황	개정 초안	
시행(예정)일	2026. 12. 01.	통보일(고시일)	2026. 01. 27.	
HS Code	28, 29	의견수렴 마감일	2026. 03. 28.	
총 수출액 (천불)	28,023,717 (2025)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79,732 (2025)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미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 환경사무국</li> </ul>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히 위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보건상의 위험 최소화 및 국제적인 규제 기준에 따른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제품 위험 저감 명령 및 기타 법령을 개정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및 제품과 관련하여 ①PFAS 규제 강화, ②수은 및 염소화 파라핀 관리 확대, ③자연환경에서의 화학제품 사용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 등 규제 체계가 강화</li> </ul>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준수를 위해 PFAS 및 POPs 등 규제 확대에 따라 원료 대체 및 제품 재설계 필요성, 공급망 관리 등 일부 비용 소요가 예상됨</li> </ul>			
대응 여부	기업 의견	-		
	대응 방안	-		

# 1

## 규제 개요

### □ 도입배경

- 스위스 연방 내 특히 위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보건상의 위험 최소화 및 국제적인 규제 기준에 따른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화학 제품 위험 저감 명령(ORRChem, RS 814.81) 및 기타 법령\*을 개정함

\* 수질 보호에 관한 명령(OEaux, RS 814.201)

식물 건강에 관한 명령(OSaVé, RS 916.20)

외국 규격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시장 출시 명령(OPPEtr, RS 946.513.8)

### □ 규제 요지

- 본 개정안에 따라 스위스 내 화학물질 관련 위험 저감을 위해 ①PFAS 규제 강화, ②수은 및 염소화 파라핀 관리 확대, ③자연환경에서의 화학 제품 사용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 등 규제 체계가 강화됨

※ 본 통보문을 통해 통보된 규제는 적용범위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본 보고서 p. 3 참조)으로 개정내용에서 정정된 사항은 없음

### □ 적용대상

- (HS 코드: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 (HS 코드: 29) 유기화학품

### □ 시행일

- 2026년 12월 1일
  - 수은 관련 규정(부속서 1.7): 2027년 6월 1일부터 시행
  - 비료 관련 규정(부속서 2.6):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

## 2

## 규제 세부 내용

### □ 세부내용

- 스위스 내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을 위해 다음의 법·규정에서 신규 규제 및 기준이 명확화됨
  - ①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ORRChim, RS 814.81)
  - ② 수질 보호에 관한 명령(OEaux, RS 814.201)
  - ③ 식물 건강에 관한 명령(OSaVé, RS 916.20)
  - ④ 외국 규격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시장 출시 명령(OPPEtr, RS 946.513.8)
- 통보문 정정 사항
  - 규제 적용 범위의 오류 정정

기존 통보문 (G/TBT/N/CHE/301)	정정 통보문 (G/TBT/N/CHE/301/Corr.1)
적용범위: 식품 접촉 재료	적용범위: ① 즉시 사용 가능한 휴대용 소화기를 포함하여, 과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PFASs)을 함유한 소화용 포말 ② 부분 할로겐화 불포화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에 대한 포장 및 표시 ③ 과불화옥탄설폰산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한 물질, 제품 및 제제 ④ 탄소 원자 15개에서 21개를 가진 퍼플루오로카복실산을 함유한 물질, 제품 및 제제 ⑤ 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함유한 물질, 제품 및 혼합물 ⑥ 클로르피리포스를 함유한 물질, 제품 및 제제 ⑦ 수은을 함유한 특정 제품 ⑧ 식물보호제품 ⑨ 비료

- 발효 일정
  -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수은 관련 규정(부속서 1.7)\*: 2027년 6월 1일부터 시행
  - \* 부속서 1.7의 1.1 제2항 c호 및 1.1 제4항 및 제4<sup>bis</sup>항
  - 비료 관련 규정(부속서 2.6):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개정사항

- 본 통보문은 기존 통보문에 있었던 일부 오류를 정정하는 것으로, 세부 개정사항은 동일

구분	주요 개정사항	기존 규정 대비 변화										
ORRChim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대상 화학제품 사용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지역 및 산림 경계 3m 구역에서의 사용</li> <li>- 자연보호 지역 등 특정 자연환경에서 식물보호제 사용 시 허가 요건 신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li> <li>- 특정 자연환경 등</li> </ul> </li> </ul>										
PFAS 및 관련 물질 규제 대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OS, PFOA, 장쇄 PFCA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판매·사용 금지</li> <li>- 허용 잔류 기준 설정</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허용 잔류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PFOS</td> <td>25ppb</td> </tr> <tr> <td>PFOS 관련 물질</td> <td>1000ppb</td> </tr> <tr> <td>PFOA/PFCA C<sub>9</sub>-C<sub>21</sub></td> <td>25ppb</td> </tr> <tr> <td>관련 물질</td> <td>260ppb</td> </tr> </tbody> </table>	구분	허용 잔류 기준	PFOS	25ppb	PFOS 관련 물질	1000ppb	PFOA/PFCA C <sub>9</sub> -C <sub>21</sub>	25ppb	관련 물질	260p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AS 계열 물질 규제 범위 확대</li> <li>• 허용 잔류 기준 명확화</li> </ul>
구분	허용 잔류 기준											
PFOS	25ppb											
PFOS 관련 물질	1000ppb											
PFOA/PFCA C <sub>9</sub> -C <sub>21</sub>	25ppb											
관련 물질	260ppb											
PFAS 포함 소화용 품 규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AS 함유 소화용 품 시장 판매 및 사용 금지</li> <li>• 일부 분야에서는 단계적 예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기: 2031년까지</li> <li>- 공항·도로 사고대응: 2027년</li> <li>- 군 공항: 2029년</li> <li>- 연료 저장시설: 2036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AS 소화용 품 신규 규제 도입</li> </ul>										
식품 접촉 포장재 PFAS 제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용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함량 기준 초과 시 판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PFAS: 25ppb</li> <li>- 총 비고분자 PFAS: 250ppb</li> <li>- 총 PFAS: 50pp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포장재 PFAS 규제 신설</li> </ul>										
수은 포함 제품의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제품에서 수은 함유 시 판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치 및 릴레이, 압력 센서, 수은 진공 펌프, 휠 밸런스 장치, 사진 필름 및 사진지, 우주 추진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지 제품 확대</li> <li>• 일부 부품용 예외 규정 신설</li> </ul>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화학물질 목록에 중쇄 염소화 파라핀(C<sub>14</sub>-C<sub>17</sub>) 추가</li> <li>• 원칙적으로 사용 및 판매 제한</li> <li>• 다음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예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우주·방위산업</li> <li>- 탄약 제조</li> <li>- 금속가공</li> <li>- 특수코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POPs 규제 대상 추가</li> </ul>										

구분	주요 개정사항	기존 규정 대비 변화
식물보호제 사용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보호구역 등에서 식물보호제 사용 시 주 당국의 허가 필요</li> <li>• 사용 후 연간 보고 의무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기록 및 보고 의무 도입</li> </ul>
산림 비료(석회) 사용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시 허가 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량: 최대 3톤/ha</li> <li>- 사용기간: 8월 중순~11월</li> <li>- 보호지역에서는 사용 금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비료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제한 도입</li> </ul>

## □ 비교표

○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ORRChim)<sup>1)</sup>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b>814.81</b> 특정 유해 물질·혼합물 및 물품 사용과 관련된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 ORRChim)</p> <p style="text-align: center;">:</p> <p><b>제4조 허가 대상 용도</b>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용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허가발급기관:</th> </tr> </thead> <tbody> <tr> <td>a. (생략)</td> <td>(생략)</td> </tr> <tr> <td>b. (생략)</td> <td>(생략)</td> </tr> <tr> <td>c. 산림 지역에서 살생물제, 식물 보호제, 기초물질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a호 또는 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td> <td>칸톤(주) 당국</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p><b>제5조 허가 요건</b> 1. 제4조 a호, c호에 따른 허가는 예정된 사용이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해당 허가는 기간과 장소가 제한된 형태로 부여된다.</p>	용도:	허가발급기관:	a. (생략)	(생략)	b. (생략)	(생략)	c. 산림 지역에서 살생물제, 식물 보호제, 기초물질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a호 또는 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칸톤(주) 당국	<p><b>814.81</b> 특정 유해 물질·혼합물 및 물품 사용과 관련된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 ORRChim)</p> <p style="text-align: center;">:</p> <p><b>제4조 허가 대상 용도</b>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용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허가발급기관:</th> </tr> </thead> <tbody> <tr> <td>a. (생략)</td> <td>(생략)</td> </tr> <tr> <td>b. (생략)</td> <td>(생략)</td> </tr> <tr> <td>c. 산림 지역 및 산림 경계선을 따라 폭 3m의 구역에서 살생물제, 식물보호제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td> <td>칸톤(주) 당국</td> </tr> <tr> <td>d. 부속서 2.5의 1.2 제3<sup>bis</sup>항에 명시된 자연환경에서 식물 보호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a호 또는 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td> <td>칸톤(주) 당국</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p><b>제5조 허가 요건</b> 1. 제4조 a호, c호, d호에 따른 허가는 예정된 사용이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해당 허가는 기간과 장소가 제한된 형태로 부여된다.</p>	용도:	허가발급기관:	a. (생략)	(생략)	b. (생략)	(생략)	c. 산림 지역 및 산림 경계선을 따라 폭 3m의 구역에서 살생물제, 식물보호제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칸톤(주) 당국	d. 부속서 2.5의 1.2 제3 <sup>bis</sup> 항에 명시된 자연환경에서 식물 보호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a호 또는 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칸톤(주) 당국
용도:	허가발급기관:																		
a. (생략)	(생략)																		
b. (생략)	(생략)																		
c. 산림 지역에서 살생물제, 식물 보호제, 기초물질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a호 또는 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칸톤(주) 당국																		
용도:	허가발급기관:																		
a. (생략)	(생략)																		
b. (생략)	(생략)																		
c. 산림 지역 및 산림 경계선을 따라 폭 3m의 구역에서 살생물제, 식물보호제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a호 또는 제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칸톤(주) 당국																		
d. 부속서 2.5의 1.2 제3 <sup>bis</sup> 항에 명시된 자연환경에서 식물 보호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a호 또는 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칸톤(주) 당국																		

1) RS 814.81

- 부속서 1.1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b>부속서 1.1</b> <b>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b></p> <p><b>1 금지사항</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3</sup> 다음 물질에는 부속서 1.16이 적용된다.</p> <p>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크 유도체 b.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및 관련 물질 c. 과불화옥탄산(PFOA) 및 관련 물질 d. (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p> <p><b>2 예외</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1bis</sup> 1의 제1항 b호에 따른 금지는 다음의 경우 물질 및 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p> <p>a. (생략) b. (생략) c. (신규)</p> <p><sup>2</sup> 1의 제2항에 따른 금지는 다음의 경우 물품 및 그 구성요소에 적용되지 않는다.</p> <p>a. (생략) b. (생략) c. (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 금지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목록</b></p> <p>a. 할로겐화 지방족 화합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헥사클로로부타디엔 (CAS 87-68-3)</li> <li>- 알칸 C10-C13, 염소 (CAS 85535-84-8)</li> <li>-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크 유도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7,8,9,14,15,16,17,17,18,18-도데카클로로 펜타사이클로...</li> <li>- (신규)</li> </ul>	<p><b>부속서 1.1</b> <b>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b></p> <p><b>1 금지사항</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3</sup> 다음 물질에는 부속서 1.16이 적용된다.</p> <p>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u>관련 물질</u> b.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및 관련 물질 c. 과불화옥탄산(PFOA) 및 관련 물질 d. <u>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PFCA C<sub>9</sub>-C<sub>14</sub> 및 PFCA C<sub>15</sub>-C<sub>21</sub>) 및 관련 물질</u></p> <p style="text-align: center;">:</p> <p><b>2 예외</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1bis</sup> 1의 제1항 b호에 따른 금지는 다음의 경우 물질 및 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p> <p>a. (생략) b. (생략) c. <u>제3항 a호 19번째 항목에 따른 중쇄 염소화 파라핀의 함량이 질량 기준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u></p> <p><sup>2</sup> 1의 제2항에 따른 금지는 다음의 경우 물품 및 그 구성요소에 적용되지 않는다.</p> <p>a. (생략) b. (생략) c. <u>제3항 a호 19번째 항목에 따른 중쇄 염소화 파라핀의 함량이 질량 기준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 금지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목록</b></p> <p>a. 할로겐화 지방족 화합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헥사클로로부타디엔 (CAS 87-68-3)</li> <li>- 알칸 C10-C13, 염소 (CAS 85535-84-8)</li> <li>-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u>관련 물질</u></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7,8,9,14,15,16,17,17,18,18-도데카클로로 펜타사이클로...</li> <li>- <u>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PFCA C<sub>9</sub>-C<sub>14</sub> 및 PFCA C<sub>15</sub>-C<sub>21</sub>) 및 관련 물질</u></li> </ul>

변경 전	변경 후
<p>- (신규)</p> <p>b. 할로겐화 단일 방향족 화합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펜타클로로벤젠 (CAS 608-93-5)</li> <li>- 헥사클로로벤젠 (CAS 118-74-1)</li> <li>- 펜타클로로페놀 (CAS 87-86-5), 그 염 및 에스테르</li> <li>- (신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 <u>중쇄 염소화 파라핀(염소 원자 3개 이상을 포함하는 C<sub>14</sub>-C<sub>17</sub> 클로로알케인)</u></p> <p>b. 할로겐화 단일 방향족 화합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펜타클로로벤젠 (CAS 608-93-5)</li> <li>- 헥사클로로벤젠 (CAS 118-74-1)</li> <li>- 펜타클로로페놀 (CAS 87-86-5), 그 염 및 에스테르</li> <li>- <u>클로르피리포스 (CAS 2921-88-2)</u></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b>4 경과규정</b></p> <p style="text-align: center;">:</p>	<p><b>4 경과규정</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6</sup> (신규)</p>	<p><sup>6</sup> <u>1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u></p> <p>a. <u>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포함한 제제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203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되며, 또한 이러한 제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시장 출시는 해당 물품이 2031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허용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제조를 위한 접착제 및 밀봉제</u></li> <li>2. <u>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제조를 위한 비구조적 접합용 접착 테이프</u></li> <li>3. <u>탄약 제조용 도료 및 기타 코팅, 또는 탄약 표시용 도료</u></li> </ol> <p>b. <u>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극압 첨가제로 포함하는 금속 가공 처리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단,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되고 적절히 처리되는 경우에 한한다.</u></p> <p>c. <u>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포함한 제제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204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되며, 또한 해당 제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시장 출시는 해당 물품이 2041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허용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소음·연기·빛 등의 특수 효과 탄약 제조용 화공제품(파이로테크닉 제품)</u></li> <li>2. <u>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제조용 팽창형</u></li> </ol>

변경 전	변경 후
	<p><u>내화도료 및 극한 온도 보호를 위한 해당 물품 포장재 제조용 도료 및 코팅</u></p> <p>d. <u>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의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중쇄 염소화 파라핀 함유 도료 또는 기타 코팅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204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된다.</u></p> <p>e. <u>해당 부품이 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수리 용인 경우 또는 해당 물품 제조 시 도료 또는 기타 코팅에 중쇄 염소화 파라핀이 사용된 경우 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포함한 예비 부품의 시장 출시는 204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된다.</u></p> <p>f. <u>다음 물품의 수리를 위한 중쇄 염소화 파라핀 함유 예비 부품의 시장 출시는 204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된다. 단, 해당 물품 제조 시 플라스틱에 중쇄 염소화 파라핀이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u></li> <li>2. <u>자동차</u></li> <li>3. <u>농업·임업·건설·조경용 기계</u></li> <li>4. <u>전기·전자 장비이기도 한 의료기기</u></li> <li>5. <u>분석·측정·제어·모니터링·시험·생산·검사용 장비</u></li> </ol> <p>g. <u>다음 제품 제조를 위한 경우, 중쇄 염소화 파라핀 및 이를 포함한 제제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a~d호에 따라 시장 출시가 허용되는 제제의 제조</u></li> <li>(2) <u>e~f호에 따라 시장 출시가 허용되는 예비 부품의 제조</u></li> </ol>

- 부속서 1.7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부속서 1.7 수은</p> <p>1 시장 출시</p> <p>1.1 금지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2</sup> 다음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c.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및 릴레이(CAS 7439-97-6)</p> <p style="text-align: center;">:</p> <p>1.2 예외</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4</sup> 1.1의 제2항 c호 1목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다음의 스위치, 릴레이 및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트랜스미터·센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b. 부속서 2.18의 3에서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릴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장비의 구성품 또는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p> <p>d. 지침 2011/65/EU의 제2조 4항 b~k에 언급된 장비, 대형 도구, 대형 설비, 운송 수단, 기계, 장치, 태양광 패널 및 파이프 오르간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p> <p><sup>4bis</sup> (신규)</p>	<p>부속서 1.7 수은</p> <p>1 시장 출시</p> <p>1.1 금지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2</sup> 다음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c. <u>다음 유형의 제품으로서 수은(CAS 7439-97-6)을 함유하는 경우:</u></p> <p>1. <u>스위치, 릴레이 및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트랜스미터 또는 센서</u></p> <p>2. <u>수은 진공 펌프(수은 사용이 필요한 장비를 포함)</u></p> <p>3. <u>휠 밸런싱 장치 및 휠 밸런싱 추</u></p> <p>4. <u>사진 필름 및 사진용 인화지</u></p> <p>5. <u>위성 및 우주선용 추진제</u></p> <p style="text-align: center;">:</p> <p>1.2 예외</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4</sup> 1.1의 제2항 c호 1목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다음의 스위치, 릴레이 및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트랜스미터·센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b. 부속서 2.18의 3에서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릴레이 또는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트랜스미터·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장비의 구성품 또는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p> <p>d. (삭제)</p> <p><sup>4bis</sup> <u>1.1의 제2항 c호 1목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u></p> <p>a. <u>지침 2011/65/EU 제2조 제4항 b~k호에 규정된 장비, 대형 공구, 대형 고정식 설비, 운송수단, 기계, 장치, 태양광 패널 및 파이프 오르간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스위치 및 릴레이</u></p>

변경 전	변경 후
<p>4<sup>ter</sup> (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p> <p>6 1.1의 제2항 e호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a. (생략)</p> <p>b. 우주로 발사될 목적으로 제조된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을 함유한 조제물 및 물품</p> <p>c.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p> <p><b>2 수출</b></p> <p><b>2.1 금지사항</b> 시장 출시가 금지된 측정 장치, 스위치, 릴레이는 수출이 금지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 사용</b></p> <p><b>3.1 금지사항</b> 다음의 사용은 금지된다:</p> <p>a. 수은(CAS 번호 7439-97-6), 수은 화합물 및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을 함유한 제제를 다음의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p> <p>1. (생략)</p> <p>2. (생략)</p> <p>3. (신규)</p>	<p>b. 지침 2011/65/EU 제2조 제4항 d호 및 e호에 규정된 대형 공구 및 대형 고정식 설비의 구성품 또는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 트랜스미터 및 센서</p> <p>4<sup>ter</sup> 1.1의 제2항 c호 2목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u>분석 및 연구 목적의 시장 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p> <p>6 1.1의 제2항 e호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a. (생략)</p> <p>b. 우주로 발사될 목적으로 제조된 수은 <u>함유 장비</u></p> <p>c.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p> <p><b>2 수출</b></p> <p><b>2.1 금지사항</b> 시장 출시가 금지된 측정 장치, 스위치, 릴레이 및 <u>램프</u>는 수출이 금지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 사용</b></p> <p><b>3.1 금지사항</b> 다음의 사용은 금지된다:</p> <p>a. 수은(CAS 번호 7439-97-6), 수은 화합물 및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을 함유한 제제를 다음의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p> <p>1. (생략)</p> <p>2. (생략)</p> <p>3. <u>부속서 2.18의 3에 따라 시장 출시가 금지된 램프</u></p>

- 부속서 1.16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b>부속서 1.16</b> <b>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b></p> <p><b>1 과불화옥탄술폰산 및 그 유도체</b></p> <p><b>1.1 정의</b> 원소 기호가 C<sub>8</sub>F<sub>17</sub>SO<sub>2</sub>X인 물질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그 유도체로 간주하며, 여기서 X는 수산화기(OH), 금속염(O-M+), 할로겐화물, 아마이드 또는 기타 유도체(중합체 포함)에 해당한다.</p> <p><b>1.2 금지사항</b> <sup>1</sup> PFOS 또는 PFOS 함량이 질량 기준 0.001% 이상인 물질 및 제제의 제조, 출시 및 사용은 금지된다.</p> <p><sup>2</sup> 다음의 신제품 또는 그 구성부품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a. PFOS를 함유하는 구조적 또는 미세구조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의 질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PFOS 함량이 질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경우 b. 섬유 또는 기타 코팅 재료의 경우: 코팅 재료 1m<sup>2</sup>당 SPFO 함량이 1µg을 초과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 과불화옥탄산,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 및 관련 물질</b></p> <p><b>3.1 정의</b></p> <p><sup>5</sup> (신규)</p>	<p><b>부속서 1.16</b> <b>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b></p> <p><b>1 과불화옥탄술폰산 및 관련 물질</b></p> <p><b>1.1 정의</b> 원소 기호가 C<sub>8</sub>F<sub>17</sub>SO<sub>2</sub>X인 물질로서 <u>선형 또는 분지형 이성질체 형태의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그 염으로 분해되는 물질은 과불화옥탄술폰산 관련 물질로 간주하며, 여기서 X는 할로겐화물, 아마이드 또는 기타 유도체(중합체 포함)에 해당한다.</u></p> <p><b>1.2 금지사항</b> <sup>1</sup> 다음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금지된다: a. PFOS 및 그 관련 물질 b.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 및 제제 1. PFOS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 2. PFOS와 관련된 총 물질의 함량: 질량 기준 0.0001%(1000ppb)</p> <p><sup>2</sup>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또는 물품 구성요소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a. PFOS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 b. PFOS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1%(1000 ppb)</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 과불화옥탄산,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 및 관련 물질</b></p> <p><b>3.1 정의</b></p> <p><sup>5</sup> <u>선형 또는 분지형 이성질체 형태와 그 염을 포함하는 과불화펜타데칸산, 과불화헥사데칸산, 과불화헵타데칸산, 과불화옥타데칸산, 과불화노나데칸산, 과불화에이코산 및 과불화헤네이코산(PFCA C<sub>15</sub>-C<sub>21</sub>)과 관련된 물질로 간주되는 것은, 선형 또는 분지형 형태의 n=14-20인</u></p>

변경 전	변경 후
<p>6 (신규)</p> <p><b>3.2 금지사항</b></p> <p><sup>1</sup> 다음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금지된다:</p> <p>a.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및 각각의 관련 물질</p> <p>b.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 및 제제</p> <p>1. PFOA 또는 PFCA C<sub>9</sub>-C<sub>14</sub>의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p> <p>2. (생략)</p> <p>3. PFCA C<sub>9</sub>-C<sub>14</sub>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26%(260ppb)</p> <p><sup>2</sup>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또는 물품 구성요소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p> <p>a. PFOA 또는 PFCA C<sub>9</sub>-C<sub>14</sub>의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p> <p>b. (생략)</p> <p>c. PFCA C<sub>9</sub>-C<sub>14</sub>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26%(260ppb)</p> <p><b>3.3 예외</b></p> <p><sup>1</sup> 3.2의 제1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a. 탄소 원자 6개 이하로 이루어진 탄소 사슬을 가진 불소화 물질의 제조 및 사용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p> <p>1. 해당 물질에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이 불가피한 부산물로 포함되는 경우, 또는</p> <p>2. (생략)</p> <p>3. 해당 물질 사용 시,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 배출이 기술 수준에 따라 방지되거나, 방지 불가능 시 가능한 한 최소화되는 경우</p>	<p>C<sub>n</sub>F<sub>2n+1</sub> 구조의 퍼플루오로알킬기를 구조 요소로 가지며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되어 있고 PFCA C<sub>15</sub>-C<sub>21</sub>로 분해되는 물질(고분자 포함)이다.</p> <p><sup>6</sup> 제5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a. 원소식이 C<sub>n</sub>F<sub>2n+1</sub>X (n=15-21) 인 물질로서, 여기서 X는 F, Cl 또는 Br에 해당하는 경우</p> <p>b. 21개 이상의 퍼플루오로화 탄소 원자를 갖는 과불화카르복실산 및 그 유도체(염, 에스터, 할로겐화물 및 무수물 포함)</p> <p><b>3.2 금지사항</b></p> <p><sup>1</sup> 다음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금지된다:</p> <p>a. PFOA, PFCA C<sub>9</sub>-C<sub>14</sub>, PFCA C<sub>15</sub>-C<sub>21</sub> 및 각각의 관련 물질</p> <p>b.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 및 제제</p> <p>1.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의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p> <p>2. (생략)</p> <p>3.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26%(260ppb)</p> <p><sup>2</sup>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또는 물품 구성요소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p> <p>a.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의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p> <p>b. (생략)</p> <p>c.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26%(260ppb)</p> <p><b>3.3 예외</b></p> <p><sup>1</sup> 3.2의 제1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a. 탄소 원자 6개 이하로 이루어진 탄소 사슬을 가진 불소화 물질의 제조 및 사용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p> <p>1. 해당 물질에 PFOA, PFCA C<sub>9</sub>-C<sub>14</sub>,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이 불가피한 부산물로 포함되는 경우, 또는</p> <p>2. (생략)</p> <p>3. 해당 물질 사용 시, PFOA, PFCA C<sub>9</sub>-C<sub>14</sub>,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 배출이 기술 수준에 따라 방지되거나, 방지 불가능 시 가능한 한 최소화되는 경우</p>

변경 전	변경 후
<p style="text-align: center;">:</p> <p>e. PFCA C<sub>9</sub>-C<sub>14</sub>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001% (100ppb)를 초과하지 않는 과불화알콕시기를 함유한 플루오로폴리머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하는 경우</p> <p><sup>2</sup> 3.2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비 침습적 및 비이식형 의료기기 및 그 구성부품, 그리고 해당 부품 제조에 필요한 물질 및 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기의 구성부품이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p> <p>a. (생략) b. (생략) c. (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4</sup> (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6</sup> (신규, 기존 6은 7로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p> <p>e.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001%(100ppb)를 초과하지 않는 과불화알콕시기를 함유한 플루오로폴리머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하는 경우</p> <p><sup>2</sup> 3.2의 제1항에 따른 <u>제조·시장 출시 및 사용 금지 및 제2항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u>는 비 침습적 및 비이식형 의료기기 및 그 구성부품, 그리고 해당 부품 제조에 필요한 물질 및 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기의 구성부품이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p> <p>a. (생략) b. (생략) c. <u>PFCA C<sub>15</sub>-C<sub>21</sub> 및 PFCA C<sub>15</sub>-C<sub>21</sub>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2%(2000ppb)</u></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4</sup> 3.2의 제1항 b호에 따른 금지 규정은 <u>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을 함유한 소화용 포말이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소가 없는 포말을 사용한 이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a. <u>소화용 포말 내 해당 물질의 함량이 이전에 불소 함유 포말을 충전했던 것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불순물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u> <u>그리고</u> b. <u>소화용 포말과 접촉하는 용기 및 부속 장치가 기술 수준에 따라 세척된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p> <p><b>6 특정 용도에서의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b></p> <p><b>6.1 부분 할로겐화 불포화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에 대한 특수포장 및 표시</b></p> <p><sup>1</sup> <u>유럽연합 규정 2024/573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로서 부분 할로겐화 불포화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FO)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 시장에 출시하여야 한다.</u></p>

변경 전	변경 후
	<p>a. <u>부속서 2.9의 3.3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용도</u></p> <p>b. <u>부속서 2.10의 2.1 및 2.2와 부속서 2.19의 2.1 및 2.2의 규정에 따라 시장 출시 또는 개인적 목적의 수입이 허용되는 설비 또는 장치에서의 용도</u></p> <p><sup>2</sup> <u>유럽연합 규정 2024/573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로서 HFO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예정인 용기의 제조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경우에만 해당 용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u></p> <p>a. <u>“불소화 온실가스를 포함함(contient des gaz à effet de serre fluorés)”이라는 문구</u></p> <p>b. <u>해당 용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될 예정인 물질의 화학적 약칭으로서 해당 용도의 산업 분야에서 인정되는 명명 규격에 따른 것</u></p> <p>c. <u>물질의 양을 kg 및 CO<sub>2</sub> 환산 톤 단위로 표시한 값과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지수(GWP)</u></p> <p><sup>3</sup> <u>제2항에 언급된 물질을 재활용 또는 재생된 형태로 포함하거나 포함할 예정인 용기 제조자는, Regulation (EU) 2024/573 제3조 제12항 및 제13항의 의미에서 재활용 또는 재생된 경우,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u></p> <p>a. <u>물질의 품질</u></p> <p>b. <u>물질이 재활용 또는 재생된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u></p> <p><b>6.2 소화용 포말에서의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b></p> <p><b>6.2.1 정의</b></p> <p><sup>1</sup> <u>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이란 수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원자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탄소(CF<sub>3</sub>) 또는 메틸렌 탄소(CF<sub>2</sub>) 원자를 최소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u></p> <p><sup>2</sup> <u>PFAS를 함유한 소화용 포말이란 PFAS의 총 함량이 리터당 1mg 이상인 포말을 의미한다.</u></p> <p><sup>3</sup> <u>포말 소화기란 휴대용 및 이동식 소화기와 소화 기능을 가진 에어로졸 발생기로서 사용 시 포말을 생성하는 장치를 의미한다.</u></p>

변경 전	변경 후
	<p><b>6.2.2 기존 규정과의 관계</b>  1.2, 2.2, 3.2, 3.3의 제4항 및 7의 제1항 a호부터 c호, 제2항 및 제4항 d호의 규정은 SPFO, PFHxS, PFOA, 장쇄 PFCA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을 함유한 소화용 포말에 적용된다.</p> <p><b>6.2.3 금지</b>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a. PFAS를 함유한 소화용 포말이 포함된 포말 소화기의 시장 출시 및 포말 소화기에 사용하기 위한 PFAS 함유 소화용 포말의 시장 출시  b. 포말 소화기 및 기타 용도로 PFAS를 함유한 소화용 포말의 사용</p> <p><b>6.2.4 예외</b>  6.2.3의 b호에 따른 금지는 다음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훈련, 시험 및 작동 시험 목적의 사용으로서, 해당 활동 중 소화용 포말이 전량 회수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 경우  b.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저장되어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스템에 통합된 PFAS 함유 소화용 포말의 사용으로서, 불소가 없는 포말을 사용한 이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소화용 포말 내 해당 물질 함량이 이전에 PFAS를 함유한 포말을 충전했던 데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불순물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  2. 소화용 포말과 접촉하는 용기 및 부속 장치가 기술 수준에 따라 세척된 경우</p> <p><b>6.3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재료 및 물품에서의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b></p> <p><b>6.3.1 정의</b>  <sup>1</sup>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이란 수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원자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탄소(CF<sub>3</sub>) 또는 메틸렌 탄소(CF<sub>2</sub>) 원자를 최소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sup>2</sup> 6.3의 의미에서 PFAS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CF<sub>3</sub>-X 또는 X-CF<sub>2</sub>-X'의 구조 요소만을 가지는 물질이며, 다음과 같다:  a. X: -OR 또는 -NRR'  b. X': 메틸, 메틸렌, 방향족기, 카보닐기, -OR'', -SR'' 또는 -NR''R'''</p>

변경 전	변경 후
<p>7 경과 규정 (기존 6)</p> <p><sup>1</sup> 1.2의 제1항에 따른 금지는, 제제의 제조 과정 및 사용 과정에서 환경으로의 PFOS 배출량이 최소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폐쇄 순환 시스템에서 비장식용 경질 크롬 도금(크롬 VI)을 위한 스프레이 억제용 PFOS 함유 제제의 사용과 크 제조에 필요한 물질 및 제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 이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p>	<p>c. R, R', R'' 및 R''' : 수소, 메틸, 메틸렌, 방향족기 또는 카보닐기</p> <p><b>6.3.2 금지</b>  <u>균질 재료 내 함량이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포장재와 2016년 12월 16일자 「식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명령」 제48조의 의미에서의 기타 재료 및 물품 중 일회용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제품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u></p> <p>a. 비고분자 PFAS 최소 1종의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  b. 관련 물질로부터 기술 수준에 따른 공정을 통해 변환되어 생성되는 것을 포함한 비고분자 PFAS 총 함량: 질량 기준 0.00025% (250ppb)  c. 비고분자 및 고분자 PFAS 총 함량: 질량 기준 0.005%(50ppm)</p> <p>7 경과 규정</p> <p><sup>1</sup> 1.2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a.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1%(10ppm)을 초과하지 않는 물질 및 제제의 시장 출시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며, 다만 해당 물질 및 제제가 포말 소화기에 사용하기 위한 소화용 포말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b.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1%(10ppm)을 초과하지 않는 물질 및 제제의 사용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c.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용도에 대해 SPFO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한 소화용 포말의 사용은 각기 명시된 기한까지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을 것  2.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1%(10ppb)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물품 또는 물품의 구성요소의 시장 출시는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해당 물품 또는 구성요소에 포함된</p>

변경 전	변경 후
	<p>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물질을 포함하는 구조적 또는 미세구조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의 질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질량 기준 0.1% 이하인 경우</p> <p>(2) 직물 또는 기타 코팅된 재료의 경우, 코팅된 재료의 제곱미터당 SPFO 및 관련 물질 총량이 1µg 이하인 경우</p>
<p><sup>2</sup> 2.2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a. 분사 억제용 PFOS 함유 제제로서 제1항에 따라 제조·시장 출사·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제제가 PFHxS 또는 PFHxS 전구체 화합물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한 불순물로만 존재하는 경우</p> <p>b.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소방용 포말의 사용으로서, 해당 포말이 PFHxS 또는 PFHxS 전구체 화합물을 포함하더라도 불가피한 불순물로만 존재하는 경우</p> <p>c. PFHxS 또는 PFHxS 전구체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시장 유통</p>	<p><sup>2</sup> 2.2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a. PFHxS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소방용 포말의 사용으로서, 제10항 및 제11항에 명시된 용도에 해당하고 각 항에서 규정된 기한까지 허용되는 경우. 다만 해당 소방용 포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c호에서 규정된 사용 조건을 충족할 것, 그리고</li> <li>2. PFHxS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li> </ol> <p>b. PFHxS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물품)으로서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시장 유통</p>
<p><sup>3</sup> 3.2의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p> <p>a. (생략)</p> <p>b. (생략)</p> <p>b<sup>bis</sup>. (신규)</p> <p>c. (생략)</p> <p>c<sup>bis</sup>. (신규)</p> <p>d.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신규)</li> </ol>	<p><sup>3</sup> 3.2의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p> <p>a. (생략)</p> <p>b. (생략)</p> <p>b<sup>bis</sup>.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의료기기(a호 1목 및 2목에서 언급된 것)와 b호에서 언급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기 또는 물품이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p> <p>c. (생략)</p> <p>c<sup>bis</sup>.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 장비의 교체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해당 반도체 및 그 구성부품에 포함된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그 관련 물질, 그리고 그 제조에 필요한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p> <p>d. 다음의 모든 기타 물품 및 그 구성부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하고,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li> </ol>

변경 전	변경 후
<p><sup>4</sup> 3.2의 제1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생략)</li> <li>b. (생략)</li> <li>c. C9-C14 PFCA 또는 그 전구체 화합물을 포함하는 플루오로폴리머를 MDI(정량식 흡입기) 용기 코팅용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028년 8월 25일까지 예외로 한다.</li> <li>d.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화용 포말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해당 포말이 PFOA 또는 PFOA 전구체 화합물을 포함하더라도 불가피한 불순물로만 존재하는 경우</li> <li>2.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해당 포말이 C9-C14 PFCA 또는 C9-C14 PFCA 전구체 화합물을 포함하더라도 불가피한 불순물로만 존재하는 경우</li> </ul> </li> </ul>	<p><sup>4</sup> 3.2의 제1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생략)</li> <li>b. (생략)</li> <li>c. PFCA C9-C14, PFCA C15-C21 또는 그 각각의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플루오로폴리머를 정량식 흡입기 코팅용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028년 8월 25일까지 예외로 한다.</li> <li>d.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소화용 포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적용 분야에 한하여 각각 명시된 날짜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소화용 포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에 출시된 것일 것</li> <li>2.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을 것</li> <li>3. 해당 물질들이 불가피한 불순물로서만 포함되어 있을 것</li> </ul> </li> </ul>
<p><sup>5</sup>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10</sup> (신규)</p>	<p><sup>10</sup> 6.2.3의 b호에 따른 금지는 소화기에서 소화용 포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p>
<p><sup>11</sup> (신규)</p>	<p><sup>11</sup> 6.2.3의 b호에 따른 금지는 사고 발생 시 소화기 이외의 용도에서 소화용 포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 기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철도, 도로 및 민간 공항에서 인화성 액체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li> <li>b. 군용 공항에서 인화성 액체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li> <li>c. 인화성 액체가 관련된 사업장 및 연료 저장 시설에서의 사고의 경우: 2036년 12월 31일까지</li> </ul>
<p><sup>12</sup> (신규)</p>	<p><sup>12</sup> 본 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칸톤 당국은 도로 및 철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소화용 포말이 완전히 회수되고 적절히 폐기되는 조건이라면 제11항 a호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도 소화용 포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변경 전	변경 후
13 (신규)	13 <u>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는 불소가 없는 대체물질의 이용 가능성과 적합성,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인구 및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11항 c호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14 (신규)	14 <u>6.3.2에 따른 금지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 및 식품 접촉용 재료·물품의 시장 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u>

– 부속서 2.5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b>부속서 2.5</b> <b>식물보호제품 및 기본물질</b></p> <p><b>1 사용</b></p> <p style="text-align: center;">:</p> <p><b>1.2 예외</b></p> <p>3 <u>산림에서 식물보호제품 및 기본물질을 환경에 대한 오염이 더 적은 다른 조치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칸톤 당국은 1.1의 제1항 d목에 따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발급하여 식물보호제품 및 기본물질의 사용을 허용한다.</u></p> <p>a. (생략) b. (생략) c. (생략) d. (생략) e. (신규)</p>	<p><b>부속서 2.5</b> <b>식물보호제품</b></p> <p><b>1 사용</b></p> <p style="text-align: center;">:</p> <p><b>1.2 예외</b></p> <p>3 <u>산림 및 산림지역 경계를 따라 폭 3m의 구역 (제3bis항에서 규정한 지역을 제외)에서, 특정 허가된 식물보호제품을 환경오염이 더 적은 조치 또는 다른 식물보호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칸톤 당국은 제1.1호 제1항 d목에 따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발급하여 해당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한다.</u></p> <p>a. (생략) b. (생략) c. (생략) d. (생략) e. <u>주로 재배 농작물 및 원예 생산을 위협하는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을 근절 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u></p> <p>1. <u>연방 농업청이 2018년 10월 31일 식물 건강에 관한 명령(OSaVé) 제13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서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규정하였을 것, 그리고</u></p>

변경 전	변경 후
<p>3bis (신규, 기존 3<sup>bis</sup>는 3<sup>quater</sup>로 변경)</p>	<p>2. 해당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이 방제 대상이 되는 발달 단계에서 산림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p> <p>3bis 다음과 같은 자연환경에서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을 근절하거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관할 칸톤 당국은 1.1의 제1항 a~c 및 e목에 따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3ter의 조건을 고려하여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발급하고 허가된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p> <p>a. 연방법 또는 칸톤법에 따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p> <p>b. 갈대습지 또는 습지 지역(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제외)</p> <p>c. 산울타리 및 소규모 수목 군락, 그리고 그 가장자리로부터 폭 3m 구역</p> <p>d. 지표수 주변 지역</p> <p>1. 「수질보호명령(OEaux)」 제41a조에 따라 수역공간이 설정된 경우, 또는 제41a조 제5항에 따라 수역공간 설정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수역공간의 육상 부분에서 수변으로부터 시작하는 구역</p> <p>2. 수역공간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경우: 수변과 제방 상단 경계로부터 최대 3m까지의 구간을 말하며, 이 구간은 1.1의 제1항 e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측정된 구역을 의미한다.</p>
<p>3ter (신규)</p>	<p>3ter 3<sup>bis</sup>에 따른 허가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p> <p>a. OSaVé에 따라 관할하는 연방기관이 OSaVé 제13조의 의미에서 적절한 조치로서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규정하였을 것</p> <p>b.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며 방제 대상이 되는 발달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p> <p>c.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환경 오염이 더 적은 조치로 대체할 수 없을 것</p> <p>d. 방제를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식물보호제품을 사용할 것</p> <p>e. 3<sup>bis</sup>의 a호 및 d호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의 경우, 해당 식물보호제품 사용이 해당 구역의 보호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의 근절 또는 억제에 대한 효용 사이의 적절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p>

변경 전	변경 후
<p><sup>3</sup>quater (기존 <sup>3</sup>bis)</p> <p style="text-align: center;">:</p> <p><b>1.3 (신규)</b></p>	<p><sup>3</sup>quater 연방교통청은 개별 사안별로 연방환경청 (OFEV)과 협의하여, 1.1의 제1항 g목에 따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보호 구역 S<sub>2</sub> 및 S<sub>n</sub>에서 식물보호제품 또는 기본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철도가 방수 구조물(밀폐된 케이싱) 안에 위치할 것</li> <li>b. 배출되는 물이 지하수 보호구역 S<sub>2</sub> 또는 S<sub>n</sub> 외부에서 처리·배출될 것</li> <li>c. 식물보호제품 또는 기본물질을 환경오염이 더 적은 다른 조치로 대체하는 것이 비례성 원칙상 과도한 부담이 될 것</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b>1.3 기록 의무 및 통보</b></p> <p><sup>1</sup> 1.2의 제3항 또는 제<sup>3</sup>bis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각 사용 건별로 제2항에 규정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할 당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sup>2</sup> 관할 당국은 1.2의 제3항 및 제<sup>3</sup>bis항에 따른 식물보호제품 사용에 관한 전년도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2월 28일 이전까지 OFEV(연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방제 목적 및 방제 대상이 된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li> <li>b. 사용된 식물보호제품의 상품명 및 연방 승인 번호</li> <li>c. 사용된 식물보호제품에 포함된 유효성분과 그 농도</li> <li>d. 사용된 식물보호제품의 양 및 사용 유형</li> <li>e. 사용 일자와 사용 장소 그리고 처리된 면적의 규모</li> </ul>

- 부속서 2.6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b>부속서 2.6</b> <b>비료</b></p> <p><b>1 사용</b></p> <p><sup>1</sup> (생략) <sup>2</sup> (생략) <sup>3</sup> (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3 금지사항 및 예외</b></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3.2 예외</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2</sup> 3.3.1의 제5항에 따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3.1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산림 및 산림 경계로부터 폭 3m의 구역에서는 지하수 보호구역(제4조~제6조) 밖의 지역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 비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a. (생략) b. (생략) c. (신규)</p> <p><sup>3</sup> (신규)</p>	<p><b>부속서 2.6</b> <b>비료</b></p> <p><b>1 사용</b></p> <p><sup>1</sup> (생략) <sup>2</sup> (생략) <sup>3</sup> <u>다음의 물질은 PFC 2에 따라 산림에 적합한 천연 염기성 광물 토양개량제로서 모두 석회로 간주되며, 특히 돌로마이트 분말 및 규산질. 현무암 암석 분말이 이에 해당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3 금지사항 및 예외</b></p> <p style="text-align: center;">:</p> <p><b>3.3.2 예외</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2</sup> 3.3.1의 제5항에 따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3.1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산림 및 산림 경계로부터 폭 3m의 구역에서는 지하수 보호구역(제4조~제6조) 밖의 지역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 비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a. (생략) b. (생략) c. <u>깊이 산성화된 토양에서 토양 기능의 회복 및 산림 건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석회 살포</u></p> <p><sup>3</sup> 제2항 c호에 따른 석회 살포 허가는 다음 지역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여될 수 없다: 1. 1966년 7월 1일 자연 및 경관 보호에 관한 연방법(LPN) 제18a조에 따른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물서식지, 그리고 이에 대한 생태적으로 충분한 완충구역 2. LPN 제18b조에 따른 지역적 또는 지방적 중요 생물서식지 3. LPN 제18조 1bis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1991년 1월 16일 자연 및 경관 보호에 관한 명령 부속서 1에 따른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 서식지 유형이 존재하는 자연 환경</p>

변경 전	변경 후
<p>4 (신규)</p> <p>3.3.3 (신규)</p>	<p>4. 1991년 10월 4일 산림법(LFo) 제20조 제4항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산림 보존구)</p> <p>5. 산성도가 높은 산림 식물군락</p> <p>6. LFo 제20조 제2항에 따른 주(州) 토지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생물다양성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p> <p>4 제2항 c호에 따른 석회 살포는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의 기간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산림 토양이 눈으로 덮여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살포되는 석회의 양은 헥타르당 3톤을 초과할 수 없다.</p> <p><b>3.3.3 보고</b></p> <p>관할 기관은 3.3.2의 제2항 c목에 따른 산림 내 석회 살포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허가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특례사항에 대해 매년 연방환경청(OFEV)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2월 28일까지 OFEV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해당 산림 구역의 위치, 면적, 산림 식생군 유형 및 토양 산성화 상태</li> <li>b. 예외적 석회 살포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된 사유</li> <li>c. 사용(살포) 날짜 및 살포 방식</li> <li>d. 살포된 석회의 종류 및 양</li> </ul>

○ 수질 보호에 관한 명령(OEaux)<sup>2)</sup>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b>제41c조 수역 확보구역의 광범위한 관리 및 이용</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3</sup> 수역 확보구역에서는 비료 또는 식물보호제의 모든 살포가 금지된다. 폭 3m의 수변 띠를 넘어서는 지역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식물에 대해, 기계적 수단으로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식물 개체별 처리가 허용된다.</p>	<p><b>제41c조 수역 확보구역의 광범위한 관리 및 이용</b></p> <p style="text-align: center;">:</p> <p><sup>3</sup> 수역 확보구역에서는 비료 또는 식물보호제의 모든 살포가 금지된다. 폭 3m의 수변 띠를 넘어서는 지역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식물에 대해, 기계적 수단으로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식물 개체별 처리가 허용된다. 또한 2005년 5월 18일자 「화학물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의 부속서 2.5에 규정된 허가 규정은 유보된다. 다만 「수자원 보호법(LEaux)」 제6조를 고려해야 한다.</p>

○ 식물 건강에 관한 명령(OSaVé)<sup>3)</sup>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b>제100조 연방농업청(OFAG) 및 연방환경청(OFEV)의 권한</b></p> <p><sup>1</sup> 연방농업청(OFAG)은 본 명령과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의 집행에 대해 권한을 가지며, 이는 주로 재배 농작물 및 생산 원예를 위협하는 특히 위험한 유해생물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p> <p><sup>2</sup> 연방환경청(OFEV)은 본 명령과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의 집행에 대해 권한을 가지며, 이는 주로 산림의 수목 및 관목을 위협하는 특히 위험한 유해생물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p> <p><sup>3</sup>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분야가 집행 과정에서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 연방농업청(OFAG)은 연방환경청(OFEV)의 동의를 받아 결정을 내린다.</p>	<p><b>제100조 연방농업청(OFAG) 및 연방환경청(OFEV)의 권한</b></p> <p><sup>1</sup> (좌동)</p> <p><sup>2</sup> (좌동)</p> <p><sup>3</sup> (좌동)</p>

2) RS 814.201

3) RS 916.20

변경 전	변경 후
<sup>3bis</sup> (신규)  <sup>4</sup> 연방농업청(OFAG)은 국제적 차원의 식물위생 관련 사안에 대해 조정 및 연락 역할을 수행한다.  <sup>5</sup> 연방농업청(OFAG)과 연방환경청(OFEV)은 본 명령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한다.	<sup>3bis</sup> 연방농업청(OFAG)이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의 근절 또는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로서, 2005년 5월 18일자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 부속서 2.5 <sup>3bis</sup> 의 a~d목에 명시된 자연환경에서 식물보호제품 사용을 규정하려는 경우, 해당 결정은 연방환경청(OFEV)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sup>4</sup> (좌동)  <sup>5</sup> (좌동)

○ 외국 규격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시장 출시 명령(OPPEtr)<sup>4)</sup> 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b>제2조 기술장벽법(LET) 제16a조 제2항 e호에 따른 예외 목록</b>  다음은 LETC 제16a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a. 화학제품으로 처리되었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신규)	<b>제2조 기술장벽법(LET) 제16a조 제2항 e호에 따른 예외 목록</b>  다음은 LETC 제16a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a. 화학제품으로 처리되었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 (ORRChim)」 부속서 1.16 6.3.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재료 및 물품

4) RS 946.513.8

### 3

##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 1

#### EU

- (현행 규정) REACH Regulation 및 POPs 규정<sup>5)</sup>을 통해 PFAS, MCCP, Chlorpyrifos 등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시장출시를 제한, 수은 함유 제품의 제조 및 판매는 EU Mercury Regulation에 따라 금지 또는 엄격히 관리됨
- (도입동향) PFAS를 포함한 지속성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건강 영향 평가를 강화하면서 European Chemicals Agency 주도로 PFAS 전면 제한안 검토 및 REACH 제한목록 확대를 추진 중\*
- \* POPs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장쇄 PFAS, 염화파라핀 등 신규 물질 규제 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화학물질이 포함된 소비재 전반은 GPSR<sup>6)</sup> 및 CLP Regulation에 따라 안전성 관리·유해성 표시·시장감시가 강화, 특히 고위험 물질(PFAS·POP 등)은 화학규제와 제품안전 규제를 연계 하여 소비재 내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추세

#### 2

#### 미국

- (현행 규정) 미국은 TSCA<sup>7)</sup>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이 PFAS, POPs 등 고위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평가·제한, 특히 Lautenberg Act<sup>8)</sup> 개정으로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규제 권한이 강화됨
- (도입동향) PFAS에 대한 환경·건강 영향 대응을 강화하면서 EPA의 PFAS 전략 로드맵에 따라 PFAS 제조·사용 보고 의무 신설, 환경 배출 기준 강화, 일부 PFAS의 단계적 사용 제한 등을 추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비재 및 산업제품은 CPSA<sup>9)</sup>에 따라 제품 안전관리 대상이 되며, 일부 주(州)에서는 소비재 내 PFAS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 법률을 도입하는 추세

5)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정: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gulation (EU) 2019/1021

6) GPSR(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일반제품안전규정 (식품 제외 모든 소비자제품 안전성 규제)

7)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 유해물질규제법

8) Lautenberg Act(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화학물질안전법

9) CPSA(Consumer Product Safety Act):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

### 3

## 일본

- (현행 규정) CSCL<sup>10)</sup>에 따라 잔류성·난분해성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PFAS 및 POPs 물질은 스톡홀름 협약 이행을 통해 제조·수입 금지 또는 사용 제한 대상으로 관리됨
- (도입동향) 일본 정부는 PFAS 등 고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인체 영향 평가를 강화하면서 환경성(MOE)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 물질 확대 및 관리기준 정비를 추진 중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화학물질이 포함된 소비재는 CPSA<sup>11)</sup>에 따라 제품 안전관리가 규제되며, 화학물질은 CSCL에 따라 제조·수입·사용이 규제되는 이원적 관리체제로 운영됨

### 4

## 중국

- (현행 규정) MEE Order No. 12<sup>12)</sup>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고위험 물질은 환경보호법<sup>13)</sup> 및 관련 관리목록을 통해 제조·사용을 제한함
- (도입동향) PFAS 등 지속성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영향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 대상 물질 목록 확대와 함께 화학물질 등록·평가 체계를 지속 정비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화학물질이 포함된 소비재는 제품품질법<sup>14)</sup> 및 소비자권익보호법<sup>15)</sup>에 따라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으며, 위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 제품 안전관리가 병행되는 체제로 운영됨

10) CSCL(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 일본 화학물질심사평가법(화심법)

11) CPSA(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일본 소비생활용품안전법

12) MEE Order No. 12: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13) 중국 환경보호법: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

14) 중국 제품품질법: 中華人民共和國產品質量法

15)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

##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예시)	EU	미국	일본	중국
기본 법 체계 (화학물질 관련)	REACH Regulation	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	화학물질심사평가법 (CSCL)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MEE Order No. 12)
주요 규제부처	유럽 화학물질청(ECHA)	환경보호청(US EPA)	환경성(MOE)	생태환경부
PFAS·POPs 관련 규제사항	POPs 규정 등을 통해 PFAS·POPs 사용 제한 및 금지 물질 목록 확대	US EPA 중심 PFAS 보고 의무 및 사용 제한 확대	환경성 중심의 POPs 협약 이행 및 규제 대상 물질 확대	환경관리 규정 및 관리목록을 통해 PFAS 등 지속성 화학물질 관리 강화
PFAS 규제	REACH 규정에서 PFAS 제한 추진 및 사용 제한 확대	TSCA 기반 PFAS 보고 의무 및 일부 사용 제한	CSCL 기반 PFAS 관리 및 평가 강화	MEE Order No. 12 기반 관리 강화
POPs 규제	POPs 제조·사용 금지	POPs 물질 사용 제한 및 환경 규제	POPs 협약 이행을 통한 제조·수입 제한	POPs 협약 이행 및 환경 관리
소화용 품 (PFAS)	REACH에서 PFAS 소방 품 제한 추진	일부 주에서 PFAS 소방 품 사용 금지	PFAS 소방 품 사용 규제 검토	환경관리 정책 중심 관리
식품 포장재 PFAS	식품 접촉 물질 규정 및 PFAS 제한 검토	일부 주에서 식품 포장 PFAS 금지	식품 접촉 물질 관리 규정 적용	식품 접촉 물질 안전기준 관리
수은 제품 규제	EU 수은 규정에 따라 수은 함유 제품 제조·판매 제한	수은 관련 제품 사용 제한 및 환경 배출 관리	수은 관련 물질 관리 및 국제협약 이행	환경보호법 체계에서 유해물질 관리
MCCP 규제	REACH 제한물질 목록에서 관리	TSCA 기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화학물질 규제 대상으로 관리	화학물질 관리 목록을 통해 관리
식물보호제	농약 승인 제도 및 사용 제한	농약 등록 및 사용 규제	농약 등록 및 사용 규제	농약 관리 규정 적용
산림 비료(석회)	토양 보호 및 환경 규제 체계 적용	토양·환경보호 규제 적용	산림관리 정책 중심의 관리	환경·토양 보호 정책 적용

## 4

##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Draft Ordinance of the Federal Council concerning amendments of the Ordinance on the Reduction of Risks relating to the Use of Certain Particularly Dangerous Substances, Preparations and Articles (Chemical Risk Reduction Ordinance, ORRChem, Fedlaw number: SR 814.81)
관리기관	스위스 연방 환경사무국
법적근거	화학제품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ORRChem)
주요목적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및 보건상의 위험 최소화, 생태계 보호

##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국제표준 적합성	EU 규제 및 국제협약과 유사한 수준, 단 EU의 등록·평가 중심 체계 (REACH)와 달리 제한 규정 중심의 구조를 채택
갱신 의무	-
적합성 평가	-

##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인체 및 환경, 생태계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 및 금지 목적은 정당한 공익목적에 해당함
비차별성	관련 화학물질 제한 기준은 모든 제품에 동일 적용되며, 역내외 차별적 요소 없음
최소무역제한성	스톡홀름 협약 및 EU 규정(REACH, POPs 등)과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특정 물질 함량 기준, 규제범위 등)은 EU 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부분적 무역제한 가능성 존재
투명성	WTO TBT 통보 및 초안 단계에서 의견수렴 수행

○ 결론 및 권고 사항

- (준수사항) 본 규제 관련 제한물질(PFAS, POPs, 수은, MCCP 등)에 대한 함량 기준 및 사용금지 요건 준수, 식품 포장재·소화용 품 등 제품별 적용 규제 확인,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 분석 및 적합성 검토, 관련 기술문서 및 공급망 정보 확보가 필요
- (규제영향) PFAS 및 POPs 등 규제 확대에 따라 원료 대체 및 제품 재설계 필요성, 공급망 관리 등 일부 비용 소요 예상
- (권고사항) ①제품 내 제한물질 사전 스크리닝 및 분석 체계 구축, ②Non-PFAS 원료 전환 추진, ③규제 변경사항 대응을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TBT 협정에 따른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쳤으며, 자국 제품과 수입 제품 간 차별적 요소 없음
- 국제협약 및 EU 규정과도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 없음

# 5

## 대응 방안

### □ 대응 방안

####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규제 적합성 확보 및 비용 효율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AS, POPs 등 제한물질 사전 적합성 점검</li> <li>- 제품별 적용 규제(식품 포장재, 소화용 품 등) 기반 관리</li> <li>- 공통 원료 중심으로 제품군 축소 전략 운영</li> <li>- 시험·분석 등 외부 전문기관 활용으로 비용 절감</li> <li>- 유통사/수입자와 협력하여 책임범위 및 리스크 분담 구조 명확화</li> </ul>
중견 기업	이중 규제 관리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와의 규제 차이(PFAS, MCCP 등) 대응 내부 승인 프로세스 연계</li> <li>- 원료 변경 시 규제영향 사전검토 프로세스 내재화</li> <li>- 공급업체 대상 물질정보(SDS 등) 정기 업데이트 및 검증 체계 구축</li> <li>- 이상사례 대응을 위한 표준 대응 프로세스 마련</li> <li>- 정기 내부 점검을 통한 제품 성분·라벨링 적합성 검증 체계 운영</li> </ul>
대기업	글로벌 통합 전략 및 공급망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obal 기준(EU 등)에 부합한 제품 설계 전략 수립 (Non-PFAS 등)</li> <li>- PFAS-POPs 등 규제물질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li> <li>- 규제 모니터링 전담 조직 및 선제적 대응 체계 확보</li> <li>- 공급망 전 단계에 컴플라이언스 감사 체계 구축</li> <li>- 규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및 리콜 대응 체계 고도화</li> </ul>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자료**

- 화학제품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ORRChem, RS 814.81) / [관련 링크](#)
- 수질 보호에 관한 명령(OEaux, RS 814.201) / [관련 링크](#)
- 식물 건강에 관한 명령(OSaVé, RS 916.20) / [관련 링크](#)
- 외국 규격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시장 출시 명령(OPPEtr, RS 946.513.8)  
/ [관련 링크](#)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유해 물질·혼합물 및 물품 사용과 관련된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 ORRChim)

개정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I

2005년 5월 18일 제정된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ORRChim)<sup>16)</sup>」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c호 및 d호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	허가 발급 기관:
c. 산림 지역 및 산림 경계선을 따라 폭 3m의 구역에서 살생물제, 식물보호제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a호 또는 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칸톤(주) 당국
d. 부속서 2.5의 1.2 제3 <sup>bis</sup> 항에 명시된 자연환경에서 식물보호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a호 또는 b호에 따른 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칸톤(주) 당국

### 제5조 제1항

1. 제4조 a호, c호, d호에 따른 허가는 예정된 사용이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해당 허가는 기간과 장소가 제한된 형태로 부여된다.

II

부속서 1.1, 1.7, 1.16, 2.5, 2.6은 첨부된 내용에 따라 개정한다.

III

기타 법령의 개정은 부속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IV

1. 본 명령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2. 다음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 부속서 1.7 제1.1항 제2항 c호 및 제1.1항, 제4항 및 제4<sup>bis</sup>항: 2027년 6월 1일 시행
- 부속서 2.6: 2027년 8월 1일 시행

16) RS 814.81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 1.1  
(제3조)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 1의 제3항 d호

3. 다음 물질에는 부속서 1.16이 적용된다:
- 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관련 물질
  - d.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PFCA C<sub>9</sub>-C<sub>14</sub> 및 PFCA C<sub>15</sub>-C<sub>21</sub>) 및 관련 물질

### 2의 제1<sup>bis</sup>항 c호 및 제2항 c호

- 1<sup>bis</sup>. 1의 제1항 b호에 따른 금지는 다음의 경우 물질 및 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 c. 제3항 a호 19번째 항목에 따른 중쇄 염소화 파라핀의 함량이 질량 기준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1의 제2항에 따른 금지는 다음의 경우 물질 및 그 구성요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 c. 제3항 a호 제19번째 항목에 따른 중쇄 염소화 파라핀의 함량이 질량 기준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3의 a호 3, 18, 19번째 항목 및 b호 4번째 항목

- a. 할로겐화 지방족 화합물
  -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관련 물질
  -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PFCA C<sub>9</sub>-C<sub>14</sub> 및 PFCA C<sub>15</sub>-C<sub>21</sub>) 및 관련 물질
  - 중쇄 염소화 파라핀 (염소 원자 3개 이상을 포함하는 C<sub>14</sub>-C<sub>17</sub> 클로로알케인)
- b. 할로겐화 단일 방향족 화합물
  - 클로르피리포스 (CAS No. 2921-88-2)

### 4의 제6항

6. 1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포함한 제제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203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되며, 또한 이러한 제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시장 출시는 해당 물품이 2031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허용된다:
    - (1)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제조를 위한 접착제 및 밀봉제
    - (2)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제조를 위한 비구조적 접합용 접착 테이프
    - (3) 탄약 제조용 도료 및 기타 코팅, 또는 탄약 표시용 도료

- b. 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극압(Extreme Pressure) 첨가제로 포함하는 금속 가공 처리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단,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되고 적절히 처리 되는 경우에 한한다.
  
- c.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포함한 제제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204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되며, 또한 해당 제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시장 출시는 해당 물품이 2041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허용된다.
  - (1) 소음·연기·빛 등의 특수 효과 탄약 제조용 화공제품(파이로테크닉 제품)
  - (2) 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제조용 팽창형 내화도료(intumescent coating) 및 극한 온도 보호를 위한 해당 물품 포장재 제조용 도료 및 코팅
  
- d. 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의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중쇄 염소화 파라핀 함유 도료 또는 기타 코팅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은 204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된다.
  
- e. 해당 부품이 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수리용인 경우 또는 해당 물품 제조 시 도료 또는 기타 코팅에 중쇄 염소화 파라핀이 사용된 경우 중쇄 염소화 파라핀을 포함한 예비 부품의 시장 출시는 204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된다.
  
- f. 다음 물품의 수리를 위한 중쇄 염소화 파라핀 함유 예비 부품의 시장 출시는 2041년 11월 30일까지 허용된다. 단, 해당 물품 제조 시 플라스틱에 중쇄 염소화 파라핀이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 (1)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 물품
  - (2) 자동차
  - (3) 농업·임업·건설·조경용 기계
  - (4) 전기·전자 장비이기도 한 의료기기
  - (5) 분석·측정·제어·모니터링·시험·생산·검사용 장비
  
- g. 다음 제품 제조를 위한 경우에는 중쇄 염소화 파라핀 및 이를 포함한 제제의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된다.
  - (1) a~d호에 따라 시장 출시가 허용되는 제제의 제조
  - (2) e~f호에 따라 시장 출시가 허용되는 예비 부품의 제조

## 수은

### 1.1의 제2항 c호

2. 다음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 c. 다음 유형의 제품으로서 수은(CAS 번호 7439-97-6)을 함유하는 경우:
- (1) 스위치, 릴레이 및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트랜스미터 또는 센서
  - (2) 수은 진공 펌프(수은 사용이 필요한 장비를 포함)
  - (3) 휠 밸런싱 장치 및 휠 밸런싱 추
  - (4) 사진 필름 및 사진용 인화지
  - (5) 위성 및 우주선용 추진제

### 1.2의 제4항 서문, b호, d호 및 제4<sup>bis</sup>항, 제4<sup>ter</sup>항 및 제6항 b호

4. 1.1의 제2항 c호 1목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다음의 스위치, 릴레이 및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트랜스미터·센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부속서 2.18의 3에서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릴레이 또는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트랜스미터·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장비의 구성품 또는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 d. (삭제)
- 4<sup>bis</sup>. 1.1의 제2항 c호 1목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지침 2011/65/EU<sup>17)</sup> 제2조 제4항 b~k호에 규정된 장비, 대형 공구, 대형 고정식 설비, 운송수단, 기계, 장치, 태양광 패널 및 파이프 오르간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스위치 및 릴레이
  - b. 지침 2011/65/EU 제2조 제4항 d호 및 e호에 규정된 대형 공구 및 대형 고정식 설비의 구성품 또는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용융 압력 트랜스듀서, 트랜스미터 및 센서
- 4<sup>ter</sup>. 1.1의 제2항 c호 2목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분석 및 연구 목적의 시장 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1.1의 제2항 e호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우주로 발사되기 위한 수은을 함유한 장비

## 2.1

측정 장치, 스위치, 릴레이 및 램프는 시장 출시가 금지된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 3.1의 a호 3목

다음의 사용은 금지된다:

- a. 수은(CAS 번호 7439-97-6), 수은 화합물 및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을 함유한 제제를 다음의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
  - (3) 부속서 2.18의 3에 따라 시장 출시가 금지된 램프

---

17) 2011년 6월 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65/EU(전기·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EU 관보 OJ L 174(2011.7.1.), p.88에 게재되었으며, 지침 (EU) 2017/2102(OJ L 305, 2017.11.21., p.8)에 의해 최근 개정됨

##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6은 7로 변경된다.

### 1 제목

#### 1 과불화옥탄술폰산 및 관련 물질

##### 1.1

선형 또는 분지형 이성질체 형태와 그 염을 포함하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관련된 물질은 원소 식이  $C_8F_{17}SO_2X$ 이며 PFOS로 분해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여기서 X는 할로겐화물, 아마이드 또는 기타 유도체(고분자 포함)를 의미한다.

##### 1.2

1. 다음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금지된다:

a. PFOS 및 그 관련 물질

b.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 및 제제

1. PFOS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

2. PFOS와 관련된 총 물질의 함량: 질량 기준 0.0001%(1000ppb)

2.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또는 물품 구성요소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a. PFOS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

b. PFOS와 관련된 총 물질의 함량: 질량 기준 0.0001%(1000ppb)

#### 3.1의 제5항 및 제6항

5. 선형 또는 분지형 이성질체 형태와 그 염을 포함하는 과불화펜타데칸산, 과불화헥사데칸산, 과불화헵타데칸산, 과불화옥타데칸산, 과불화노나데칸산, 과불화에이코산 및 과불화헤네이코산(PFCA  $C_{15}-C_{21}$ )과 관련된 물질로 간주되는 것은, 선형 또는 분지형 형태의  $n=14-20$ 인  $C_nF_{2n+1}$  구조의 퍼플루오로알킬기를 구조 요소로 가지며 다른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되어 있고 PFCA  $C_{15}-C_{21}$ 로 분해되는 물질(고분자를 포함)이다.

6. 제5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원소식이  $C_nF_{2n+1}X$  ( $n=15-21$ ) 인 물질로서, 여기서 X는 F, Cl 또는 Br에 해당하는 경우

b. 21개 이상의 퍼플루오로화 탄소 원자를 갖는 과불화카르복실산 및 그 유도체(염, 에스터, 할로겐화물 및 무수물 포함)

#### 3.2의 제1항 a호 및 b호 1목, 3목, 그리고 2의 a호 및 c호

1. 다음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금지된다:

- a. PFOA, PFCA C<sub>9</sub>-C<sub>14</sub>, PFCA C<sub>15</sub>-C<sub>21</sub> 및 각각의 관련 물질
- b.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 및 제제
  - (1)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의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
  - (3)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26%(260ppb)

- 2.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또는 물품 구성요소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 a.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의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
  - c.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026%(260ppb)

**3.3의 제1항 a호 1목, 3목 및 e호, 제2항 서문 및 c호, 그리고 제4항**

- 1. 3.2의 제1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탄소 원자 6개 이하로 이루어진 탄소 사슬을 가진 불소화 물질의 제조 및 사용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 (1) 해당 물질에 PFOA, PFCA C<sub>9</sub>-C<sub>14</sub>,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이 불가피한 부산물로 포함되는 경우, 또는
    - (3) 해당 물질 사용 시, PFOA, PFCA C<sub>9</sub>-C<sub>14</sub>,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 배출이 기술 수준에 따라 방지되거나, 방지 불가능 시 가능한 한 최소화되는 경우
  - e.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PFCA C<sub>15</sub>-C<sub>21</sub>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001%(100ppb)를 초과하지 않는 과불화알콕시기를 함유한 플루오로폴리머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하는 경우
- 2. 3.2의 제1항에 따른 제조·시장 출시 및 사용금지와 제2항에 따른 시장 출시 금지는 비침습적 및 비이식형 의료기기 및 그 구성부품, 그리고 해당 부품 제조에 필요한 물질 및 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기의 구성부품이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c. PFCA C<sub>15</sub>-C<sub>21</sub> 및 PFCA C<sub>15</sub>-C<sub>21</sub> 관련 총 물질 함량: 질량 기준 0.0002%(2000ppb)
- 4. 3.2의 제1항 b호에 따른 금지 규정은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을 함유한 소화용 포말이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소가 없는 포말을 사용한 이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a. 소화용 포말 내 해당 물질의 함량이 이전에 불소 함유 포말을 충전했던 것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불순물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 b. 소화용 포말과 접촉하는 용기 및 부속 장치가 기술 수준에 따라 세척된 경우

**6**

**6 특정 용도에서의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6.1 부분 할로겐화 불포화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에 대한 특수포장 및 표시**

- 1. 유럽연합 규정 2024/573<sup>18)</sup>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로서 부분 할로겐화 불포화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FO)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 시장에

18) 2024년 2월 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573 불소화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침 (EU) 2019/1937을 개정하고 규정 (EU) 제517/2014를 폐지하는 규정, EU 관보 JO L 2024/573 판

출시하여야 한다:

- a. 부속서 2.9의 3.3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용도
  - b. 부속서 2.10의 2.1 및 2.2와 부속서 2.19의 2.1 및 2.2의 규정에 따라 시장 출시 또는 개인적 목적의 수입이 허용되는 설비 또는 장치에서의 용도
2. 유럽연합 규정 2024/573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로서 HFO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할 예정인 용기의 제조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경우에만 해당 용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 a. “불소화 온실가스를 포함함(contient des gaz à effet de serre fluorés)”이라는 문구
  - b. 해당 용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될 예정인 물질의 화학적 약칭으로서 해당 용도의 산업 분야에서 인정되는 명명 규격에 따른 것
  - c. 물질의 양을 kg 및 CO<sub>2</sub> 환산 톤 단위로 표시한 값과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지수(GWP)
3. 제2항에 언급된 물질을 재활용 또는 재생된 형태로 포함하거나 포함할 예정인 용기 제조자는, Regulation (EU) 2024/573 제3조 제12항 및 제13항의 의미에서 재활용 또는 재생된 경우,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a. 물질의 품질
  - b. 물질이 재활용 또는 재생된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 6.2 소화용 포말에서의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 6.2.1 정의

1.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이란 수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원자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탄소(CF<sub>3</sub>) 또는 메틸렌 탄소(CF<sub>2</sub>) 원자를 최소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2. PFAS를 함유한 소화용 포말이란 PFAS 총 함량이 리터당 1mg 이상인 포말을 의미한다.
3. 포말 소화기란 휴대용 및 이동식 소화기와 소화 기능을 가진 에어로졸 발생기로서 사용 시 포말을 생성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 6.2.2 기존 규정과의 관계

1.2, 2.2, 3.2, 3.3의 제4항 및 7의 제1항 a호부터 c호, 제2항 및 제4항 d호의 규정은 SPFO, PFHxS, PFOA, 장쇄 PFCA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을 함유한 소화용 포말에 적용된다.

### 6.2.3 금지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 a. PFAS를 함유한 소화용 포말이 포함된 포말 소화기의 시장 출시 및 포말 소화기에 사용하기 위한 PFAS 함유 소화용 포말의 시장 출시
- b. 포말 소화기 및 기타 용도로 PFAS를 함유한 소화용 포말의 사용

### 6.2.4 예외

6.2.3의 b호에 따른 금지는 다음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훈련, 시험 및 작동 시험 목적의 사용으로서, 해당 활동 중 소화용 포말이 전량 회수되고 적절하게 처리되는 경우
- b.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저장되어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스템에 통합된 PFAS 함유 소화용 포말의 사용으로서, 불소가 없는 포말을 사용한 이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1) 소화용 포말 내 해당 물질 함량이 이전에 PFAS를 함유한 포말을 충전했던 데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불순물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
  - (2) 소화용 포말과 접촉하는 용기 및 부속 장치가 기술 수준에 따라 세척된 경우

### 6.3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재료 및 물품에서의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 6.3.1 정의

1.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이란 수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원자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탄소(CF<sub>3</sub>) 또는 메틸렌 탄소(CF<sub>2</sub>) 원자를 최소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2. 6.3의 의미에서 PFAS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CF<sub>3</sub>-X 또는 X-CF<sub>2</sub>-X'의 구조 요소만을 가지는 물질이며, 다음과 같다:
  - a. X: -OR 또는 -NRR'
  - b. X': 메틸, 메틸렌, 방향족기, 카보닐기, -OR'', -SR'' 또는 -NR''R'''
  - c. R, R', R'' 및 R''': 수소, 메틸, 메틸렌, 방향족기 또는 카보닐기

#### 6.3.2 금지

균질 재료 내 함량이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포장재와 2016년 12월 16일자 「식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명령<sup>19)</sup>」 제48조의 의미에서의 기타 재료 및 물품 중 일회용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제품의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 a. 비고분자 PFAS 최소 1종의 함량: 질량 기준 0.0000025%(25ppb)
- b. 관련 물질로부터 기술 수준에 따른 공정을 통해 변환되어 생성되는 것을 포함한 비고분자 PFAS 총 함량: 질량 기준 0.000025%(250ppb)
- c. 비고분자 및 고분자 PFAS 총 함량: 질량 기준 0.005%(50ppm)

---

19) RS 817.02

**7의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b<sup>bis</sup>호, c<sup>bis</sup>호 및 d호의 3목, 제4항 c호 및 d호, 제5항 및 제10항~제13항**

1. 1.2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1%(10ppm)을 초과하지 않는 물질 및 제제의 시장 출시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며, 다만 해당 물질 및 제제가 포말 소화기에 사용하기 위한 소화용 포말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b.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1%(10ppm)을 초과하지 않는 물질 및 제제의 사용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
- c.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용도에 대해 SPFO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한 소화용 포말의 사용은 각기 명시된 기한까지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1)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을 것
  - (2)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질량 기준 0.001%(10ppb)를 초과하지 않을 것.
- d.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물품 또는 물품의 구성요소의 시장 출시는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1) 해당 물품 또는 구성요소에 포함된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물질을 포함하는 구조적 또는 미세구조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의 질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질량 기준 0.1% 이하인 경우
  - (2) 직물 또는 기타 코팅된 재료의 경우, 코팅된 재료의 제곱미터당 SPFO 및 관련 물질 총량이 1µg 이하인 경우

2. 2.2의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PFHxS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한 소화용 포말을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각기 명시된 기한까지 허용된다:
  - (1) 제1항 c호에 명시된 사용 조건을 충족할 것
  - (2) PFHxS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이 SPFO 및 그 관련 물질의 총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b.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물품으로서 PFHxS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한 경우, 해당 물품의 시장 출시에는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3.2의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b<sup>bis</sup>.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한 의료기기(a호 1목 및 2목에서 언급된 것)와 b호에서 언급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기 또는 물품이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c<sup>bis</sup>.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 장비의 교체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해당 반도체 및 그 구성부품에 포함된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그 관련 물질, 그리고 그 제조에 필요한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d. 다음의 모든 기타 물품 및 그 구성부품:
  - (3)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그 관련 물질을 포함하고,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경우

4. 3.2의 제1항에 따른 금지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c. 정량식 흡입기의 코팅을 위한 목적으로, PFCA C<sub>9</sub>-C<sub>14</sub>, PFCA C<sub>15</sub>-C<sub>21</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불소 중합체의 시장 출시 및 사용에 대해서는 2028년 8월 25일까지 예외로 한다.

d. PFOA, PFCA C<sub>9</sub>-C<sub>14</sub> 또는 각각의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소화용 포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10항 및 제11항에 언급된 적용 분야에 한하여 각각 명시된 날짜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1) 해당 소화용 포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에 출시된 것일 것
- (2)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동식 또는 고정식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을 것
- (3) 해당 물질들이 불가피한 불순물로서만 포함되어 있을 것

## 5. (삭제)

10. 6.2.3의 b호에 따른 금지는 소화기에서 소화용 포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11. 6.2.3의 b호에 따른 금지는 사고 발생 시 소화기 이외의 용도에서 소화용 포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 기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a. 철도, 도로 및 민간 공항에서 인화성 액체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 b. 군용 공항에서 인화성 액체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 c. 인화성 액체가 관련된 사업장 및 연료 저장시설에서의 사고의 경우: 2036년 12월 31일까지

12. 본 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칸톤 당국은 도로 및 철도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소화용 포말이 완전히 회수되고 적절히 폐기되는 조건이라면 제11항 a호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도 소화용 포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3.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는 불소가 없는 대체물질의 이용 가능성과 적합성,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인구 및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11항 c호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 6.3.2에 따른 금지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 및 식품 접촉용 재료·물품의 시장 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식물보호제품

### 1.2의 제3항 서문 및 e호, 제3<sup>bis</sup>항 및 제3<sup>ter</sup>항

#### 1.2 예외

3. 산림 및 제3<sup>bis</sup>항에서 규정한 구역 외의 산림 가장자리로부터 폭 3m 구역에서, 특정 허가된 식물 보호제품을 환경 오염이 더 적은 조치 또는 식물보호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칸톤 당국은 1.1의 제1항 d호에 따른 금지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허가를 통해 해당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e. 주로 재배 농작물 및 원예 생산을 위협하는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을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연방 농업청이 2018년 10월 31일 식물건강에 관한 명령(OSaVé)<sup>20)</sup> 제13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서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규정하였을 것, 그리고
  - (2) 해당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이 방제 대상이 되는 발달 단계에서 산림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3<sup>bis</sup>. 다음과 같은 자연환경에서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을 근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관할 칸톤 당국은 1.1의 제1항 a호부터 c호 및 e호에 따른 금지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3<sup>ter</sup>항의 조건을 고려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허가를 통해 허가된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a. 연방법 또는 칸톤법에 따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b. 갈대습지 또는 습지 지역(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제외)
- c. 산울타리 및 소규모 수목 군락, 그리고 그 가장자리로부터 폭 3m 구역
- d. 지표수 주변 지역
  - (1) 「수질보호명령(OEaux)<sup>21)</sup>」 제41a조에 따라 수역공간이 설정된 경우, 또는 제41a조 제5항에 따라 수역공간 설정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수역공간의 육상 부분에서 수변으로부터 시작하는 구역
  - (2) 수역공간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경우: 수변과 제방 상단 경계로부터 최대 3m까지의 구간을 말하며, 이 구간은 1.1의 제1항 e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측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3<sup>ter</sup>. 제3<sup>bis</sup>항에 따른 허가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

- a. OSaVé에 따라 관할하는 연방기관이 OSaVé 제13조의 의미에서 적절한 조치로서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규정하였을 것
- b.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며 방제 대상이 되는 발달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 c. 식물보호제품의 사용을 환경 오염이 더 적은 조치로 대체할 수 없을 것

20) RS 916.20

21) RS 814.201

- d. 방제를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식물보호제품을 사용할 것
- e. 제3<sup>bis</sup>항 a호 및 d호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의 경우, 해당 식물보호제품 사용이 해당 구역의 보호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의 근절 또는 억제에 대한 효용 사이의 적절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sup>quater</sup>

구 3<sup>bis</sup>

### 1.3

#### 1.3 기록 의무 및 통보

1. 1.2의 제3항 또는 제3<sup>bis</sup>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각 사용 건별로 제2항에 규정된 정보를 기록 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할 당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관할 당국은 1.2의 제3항 및 제3<sup>bis</sup>항에 따른 식물보호제품 사용에 관한 전년도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2월 28일 이전까지 OFEV(연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 방제 목적 및 방제 대상이 된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
  - b. 사용된 식물보호제품의 상품명 및 연방 승인번호
  - c. 사용된 식물보호제품에 포함된 유효성분과 그 농도
  - d. 사용된 식물보호제품의 양 및 사용 유형
  - e. 사용 일자와 사용 장소, 그리고 처리된 면적의 규모

## 비료

### 1의 제3항

3. 다음의 물질은 PFC 2에 따라 산림에 적합한 천연 염기성 광물 토양개량제로서 모두 석회로 간주되며, 특히 돌로마이트 분말 및 규산질현무암 암석 분말이 이에 해당한다.

### 3.3.2의 제2항 c호, 제3항 및 제4항

2. 3.3.1의 제5항에 따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3.1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산림 및 산림 경계로부터 폭 3m의 구역에서는 지하수 보호구역(제4조~제6조) 밖의 지역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 비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c. 깊이 산성화된 토양에서 토양 기능의 회복 및 산림 건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석회 살포

3. 제2항 c호에 따른 석회 살포 허가는 다음 지역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여될 수 없다:

- (1) 1966년 7월 1일 자연 및 경관 보호에 관한 연방법(LPN)<sup>23)</sup> 제18a조에 따른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물서식지, 그리고 이에 대한 생태적으로 충분한 완충구역
- (2) LPN 제18b조에 따른 지역적 또는 지방적 중요 생물서식지
- (3) LPN 제18조 제1bis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1991년 1월 16일 자연 및 경관 보호에 관한 명령<sup>24)</sup> 부속서 1에 따른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 서식지 유형이 존재하는 자연환경
- (4) 1991년 10월 4일 산림법(LFo)<sup>25)</sup> 제20조 제4항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산림 보존구)
- (5) 산성도가 높은 산림 식물군락
- (6) LFo 제20조 제2항에 따른 주(州) 토지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생물다양성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4. 제2항 c호에 따른 석회 살포(석회 시비)는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의 기간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산림 토양이 눈으로 덮여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살포되는 석회의 양은 헥타르당 3톤을 초과할 수 없다.

### 3.3.3

#### 3.3.3 보고

관할 기관은 3.3.2의 제2항 c목에 따른 산림 내 석회 살포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허가되거나 허가되지

---

22) 2007년 11월 14일자 명령의 부속서 V(RO 2007 6295), 2013년 10월 23일자 직접지불에 관한 명령의 부속서 9의 제1호(RO 2013 4145), 2015년 11월 4일자 명령의 부속서 제2호(RO 2015 4791), 그리고 2023년 11월 1일자 비료에 관한 명령의 부속서 5 제II부 제3호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O 2023 711).

23) RS 451

24) RS 451.1

25) RS 921.0

않은 예외(특례) 사항에 대해 매년 연방환경청(OFEV)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2월 28일까지 OFEV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 해당 산림 구역의 위치, 면적, 산림 식생군 유형 및 토양 산성화 상태
- b. 예외적 석회 살포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된 사유
- c. 사용(살포) 날짜 및 살포 방식
- d. 살포된 석회의 종류 및 양

## 기타 법령의 개정

다음에 열거된 법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1998년 10월 28일자 「수질 보호에 관한 명령<sup>26)</sup>」

#### 제41c조 제3항

3. 수역 보호공간에서는 비료 또는 식물보호제품의 살포가 모두 금지된다. 다만, 수변에서 폭 3m의 구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식물에 대해 기계적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 식물 단위 처리가 허용된다. 또한 2005년 5월 18일자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sup>27)</sup>」 부속서 2.5에 따른 허가 규정은 적용되며, 이 경우 수질보호법(LEaux) 제6조를 고려해야 한다.

### 2. 2018년 10월 31일자 「식물 건강에 관한 명령<sup>28)</sup>」

#### 제100조 제3<sup>bis</sup>항

3<sup>bis</sup>. 연방농업청(OFAG)이 검역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해충의 근절 또는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로서, 2005년 5월 18일자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sup>29)</sup>」 부속서 2.5 3<sup>bis</sup>의 a~d목에 명시된 자연환경에서 식물보호제품 사용을 규정하려는 경우, 해당 결정은 연방환경청(OFEV)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 3. 2010년 5월 19일자 「외국 규격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시장 출시 명령<sup>30)</sup>」

#### 제2조 a목 제7호

다음의 제품은 기술장벽법(LETC) 제16a조 제1항에서 정한 원칙의 예외로 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화학제품으로 처리되었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

(7) 「화학제품 관련 위험 저감에 관한 명령(ORRChim)」 부속서 1.16 6.3.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재료 및 물품

---

26) RS 814.201

27) RS 814.81

28) RS 916.20

29) RS 814.81

30) RS 946.513.8